

남 양 주 시 보

제1875호

남양주시 고시 제2020-430호

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·폐지) 및 지형도면고시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·폐지) 하였음을 고시하고, 결정된 소하천구역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0. 11. 12.

남양주시장

1. 근거 : 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2항
2. 소하천구역 결정 내용

수계(水系)명	소하천명	소하천 구간		구간 (m)	면적 (㎡)	결정일 결정사유
		시작하는 지점	끝나는 지점			
덕송천	만산천	별내동 산202-8	별내동 2237-5	501	5,075	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

3. 소하천구역에 편입될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: 게재생략(열람장소 비치)
4. 소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: 게재생략(열람장소 비치)
5. 소하천구역의 열람에 관한 사항
소하천구역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는 아래 관계기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※ 열람장소

경기도 남양주시 생태하천과 (031-590-4408). 끝.